

<별표>

## 포상금 산정기준

### 1. 포상금 산정

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 산정

기준금액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회사, 회사관계자, 감사인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 총액 (과징금이 일부 납부된 경우 납부된 과징금 금액)의 3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
#### 나. 기여도 산정

- (1) 신고내용의 구체성, 감리·조사에의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결정한다.
- (2) 기여도는 기여율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비율로 한다.

항 목	기여율(%)			가중치(%)
	100-80	70-40	30-0	
신고내용의 구체성 <sup>1)</sup>	상	중	하	40
조사 및 적발 기여도 <sup>2)</sup>	상	중	하	40
부정행위의 중요도 <sup>3)</sup>	상	중	하	20

1) 신고내용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
- ①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
- ②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빙자료, 핵심 단서, 주요 정보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
- ③ 제공한 자료나 정보의 구체성과 부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도

2) 조사 및 적발 기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
- ① 신고내용이 감리·조사결과 전체사건 내용과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여부  
(예 : 완전히 또는 거의 부합, 대부분 부합, 일부만 부합, 매우 미미한 부분만 부합)
- ② 신고가 시의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
(예 : 사건 초기단계 신고, 부정행위 상당기간 진행 중 신고, 부정행위 종료 후 신고 등)
- ③ 신고내용에 핵심 부정행위자 및 핵심 부정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

3) 부정행위의 중요도는 부정행위의 원인·결과·방법과 부정행위의 지속기간, 부정행위 가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
#### 다. 포상금 지급액 산정

(1)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.

(2) 위와 같이 산정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및 신고내용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조치가 과실 이하에 해당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0만원을 포상금 지급액으로 한다.

라. 포상금 지급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.